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임상교수요원 법적근거 및 대학의
공공보건의료사업 보조근거 마련〉

■ 성일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90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성일중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1.
3. 회부연월일 :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병원이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후단 신설>	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 ----- ----- ----- ----- .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으로서 제8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임상교수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병원의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② (생략) <신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u>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1. 공공임상교수제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이 기존 임상교수와 별도 트랙의 임상교수(정원 50명)를 채용하여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순환근무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함. 이는 응급, 분만, 감염병 등 필수의료 공백에 따른 지역별 의료 격차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립대병원 재정여건 악화 등을 감안하여 2025년까지 한시 지원할 예정으로 변경되었음.

동 사업은 2022년에는 150명 정원을 목표로 운영되었으나, 신청자 저조 등을 이유로 2024년에는 50명 정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24년 9월 기준 32명의 공공임상교수가 채용되어 있음.

< 대학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정·현원 현황 >

	구분	합계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2022년	정원	150	18	15	14	7	17	15	19	15	15	15
	현원	23	7	1	-	-	8	-	3	-	3	1
2023년	정원	150	18	15	11	6	28	13	16	14	14	15
	현원	28	5	2	-	-	11	-	4	-	5	1
2024년 (9월)	정원	50	8	4	2	-	19	2	5	-	7	3
	현원	32	4	1	-	-	13	2	5	-	6	1

개정안은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이러한 충원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교육부는 공공보건의료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 임용 및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의료 현장에서의 공공임상교수의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16조제1항의 “전담하는”을 “담당하는”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함.¹⁾

기획재정부는 현 전공의 사태로 인한 국립대병원 재정여건 악화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당초 '24년 종료 예정이었던 공공임상교수 사업을 '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인건비 국립대병원 부담 원칙²⁾에 따라 한시 지원 후 자체 운영 필요한바, 안 제16조제4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임.

1) 국립대학교 병원협회도 동일한 의견임.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2. 대학에서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보조근거 마련

개정안은 대학에서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³⁾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⁵⁾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규정만으로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인 국립대학병원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동 개정안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⁶⁾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및 금액 등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근거가 없더라도 보조금 지급은 가능함.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편성요건의 하나로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명시⁷⁾하고 있으며,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평가항목에서도 보조사업 법적근거를 고려하고 있음.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7)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5. p.102

<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평가항목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의 필요성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3.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4. 보조사업 법적 근거
1-5. 사회적가치 실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2.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2-4. 보조사업 관리에 관련한 규정 마련
2-5. 자체 사업관리 노력
2-6. 평가결과 이행여부
2-7. 실집행 실적

이상을 고려할 때, 대학이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보조 근거 마련은 행정작용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 보조금 편성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가 담당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은 대학병원 수익 기여도가 낮아, 정부 지원이 있어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